

심 사 보 고 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3.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 6. 25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2003. 6. 26
- 라. 심사기간 : 2003. 7. 4

2.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A)	결 산 액		
		세 입(B) (B/A)	세 출(C) (C/A)	잉여금(D) (D/B)
합 계	297,967,880	300,208,562 (100.8%)	204,394,119 (67.6%)	95,814,443 (31.9%)
일반회계	268,383,938	270,580,752 (100.8%)	185,664,260 (69.2%)	84,916,492 (31.4%)
특별회계	29,583,942	29,627,810 (100.1%)	18,729,859 (63.3%)	10,897,951 (36.8%)

나. 세입 분석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A)	결 산 액			
		징수결정액(B) (B/A)	실수납액(C) (C/B)	결손처분(D) (D/B)	미수납액(E) (E/B)
합 계	297,967,880	306,714,469 (102.9%)	300,208,562 (97.9%)	262,308 (0.1%)	6,505,907 (2.1%)
일반회계	268,383,938	276,523,789 (103.0%)	270,580,752 (97.8%)	261,972 (0.1%)	5,943,037 (2.1%)
특별회계	29,583,942	30,190,680 (102.0%)	29,627,810 (98.1%)	336 (-)	562,870 (1.9%)

다. 세입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 결손처분액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계	무 재 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기 타
합 계	262,308	118,962	0	15,065	0	128,281
일 반 회 계	261,972	118,962	0	15,065	0	127,945
특 별 회 계	336	0	0	0	0	336

◎ 미수납액(다음년도 이월액)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계	사 유 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및재산 압류	기 타
합 계	6,243,598	0	258,308	81,564	3,364,574	0	2,539,152
일반회계	5,681,065	0	256,128	31,971	3,045,844	0	2,347,122
특별회계	562,533	0	2,180	49,593	318,730	0	192,030

라. 세출 분석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A)	결 산 액			
		지출원안행위액(B) (B/A)	지출액(C) (C/A)	이월액(D) (D/A)	불용액(E) (E/A)
합 계	297,967,880	207,228,498 (69.5%)	204,394,119 (68.5%)	73,629,123 (24.7%)	19,944,638 (6.7%)
일반회계	268,383,938	188,479,639 (70.2%)	185,664,259 (69.2%)	70,934,162 (26.4%)	11,785,517 (4.4%)
특별회계	29,583,942	18,748,859 (63.3%)	18,729,860 (63.3%)	2,694,961 (9.1%)	8,159,121 (27.6%)

마. 잉여금 및 이월액 분석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속 비	보 조 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5,814,443	37,565,310 (925,000)	2,834,379	33,229,434	750,846	21,434,474
일반회계	84,916,492	37,065,310 (925,000)	2,815,379	31,053,473	727,167	13,255,163
특별회계	10,897,951	500,000	19,000	2,175,961	23,679	8,179,311

바. 예산이용,전용,이체

◎ 예산 이용 : 없음.

◎ 예산 전용

(단위 : 천원)

회 계 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3	147,500	
일반회계	3	147,500	마을회관 임대료 및 특용작물 명품화추진,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특별회계	0	0	

◎ 예산 이체 : 없음.

사. 계속비 집행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이월액 (E=C-D)	불용액
계	22,644,331	13,514,185	35,838,516	5,105,043	31,053,273	0
오염하천 정화 사업	3,461,827	2,213,673	5,675,500	1,168,601	4,506,899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 포함)	2,077,835	7,212,215	9,290,050	11,478	9,278,572	0
시도11호선확포장	750,820	0	750,820	241,149	509,671	0
남둔선농어촌도로 확포장	1,029,849	0	1,029,849	454,685	575,164	0
국도연결간선도로 (대로1-2호)개설	3,324,000	480,297	3,484,297	3,227,530	576,767	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679,000	0	679,000	0	679,000	0
음암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	955,000	3,608,000	4,563,000	0	4,563,000	0
서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공사	3,206,000	0	3,206,000	800	3,205,000	0
대산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7,160,000	0	7,160,000	800	7,159,200	0

□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 별책(공인회계사 회계감사로 같음)

□ 특별회계 : 없음.

아. 채무부담 행위

□ 일반 회 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채무부담행위 승 인 액	채무부담 행 위 액	상환조건	채무부담 행위사유	당해연도말 현 재 액
2 건	841,000	841,000			841,000
갈현천정비	691,000	691,000	일시상환	도비보조금 해당액 2003년도 지원 전제	691,000
동암천정비	150,000	150,000	"	도비보조금 해당액 2003년도 지원 전제	150,000

□ 특 별 회 계 : 없음.

3. 기금 운용

(단위 : 천원)

종 류 별	2001년말 현 재 액	2002년 증 감 액			2002년말 현 재 액
		수 납 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3,136,514	714,647	382,722	331,925	3,468,439
재 난 관 리 기 금	205,563	53,762	0	53,762	259,325
제 해 대 책 기 금	751,533	214,271	19,750	194,521	946,054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72,074	15,268	34,550	△19,282	352,792
노 인 복 지 기 금	1,049,904	22,674	54,510	△31,836	1,018,068
여성발전복지기금	246,048	143,118	34,000	109,118	355,166
환 경 보 전 기 금	131,392	225,309	231,832	△6,523	124,869
중소기업육성기금	380,000	20,000	0	20,000	400,000
식 품 진 흥 기 금	0	20,245	8,080	12,165	12,165
감 채 적 립 기 금	0	0	0	0	0

4. 채권 및 채무

가. 채 권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말 현재액	2002년도 발생액	2002년도 소멸액	2002년말 현재액
합 계		5,174,791	3,101,217	1,993,130	6,282,878
일반회계		230,758	36,120	678	266,200
특별회계	소 계	4,700,643	2,999,632	1,975,672	5,724,603
	새마을	866,100	115,000	148,500	832,600
	영세민	842,473	261,397	111,804	992,066
	주택	1,699,441	1,862,465	1,161,687	2,400,219
	농촌	1,288,151	751,812	546,718	1,493,245
	의료보호	4,478	8,958	6,964	6,472
기금	소 계	243,390	65,465	16,780	292,075
	여성발전	243,390	15,465	16,780	242,075
	노인복지	0	50,000	0	50,000

나. 채 무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말현재액	2002년 발생액	2002년 소멸액	2002년말 현재액
합 계		25,875,000	841,000	7,842,200	18,873,800
일반회계		6,870,000	841,000	2,553,606	5,157,394
특별회계	소 계	19,005,000	0	5,288,594	13,716,406
	공기업	15,136,000	0	2,071,068	13,064,932
	주택	681,000	0	156,282	524,718
	농공단지	3,188,000	0	3,061,244	126,756

5.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말 현재액	2002년 증 감 액			2002년말 현재액	
		취득 관리전환	및 등	매각 관리전환		및 등
합 계	417,769,544	79,727,443		286,686	79,440,757	497,210,301
행정재산	189,719,096	79,670,404		75,383	79,595,021	269,314,117
보존재산	183,471,001	0		0	0	183,471,001
잡종재산	44,579,447	57,039		211,303	△154,264	44,425,183

6.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액 : 천원, 수량 : 개)

구 분	2001년말 보유현황	2002 증 감 실적		2002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수 량	1,146	216	95	1,267
금 액	3,868,031	685,105	298,034	4,255,102

7. 검토 의견

□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개황은

- ◎ 예산현액은 2,979억 6,788만원이며, 세입징수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8%인 3,002억 856만 1천원, 세출은 67.6%인 2,043억 9,411만 9천원, 잉여금은 세입징수액의 31.9%인 958억 1,444만 2천원임.
- ◎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월금이 2000년도에 540억원(24%), 2001년도에 713억원(26%), 2002년도에는 958억원(32%)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요구됨.

□ 이를 부분별로 분석하면

◎ 세입부분

-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 2,765억여원중 97.8%인 2,706억여원이 징수된바, 이는 예년과 비슷한 실적이며 체납액이 2000년도 3.1%, 2001년도 2.5%, 2002년도에는 2.1%로 매년 소폭이지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세수확보 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 또한, 불납 결손액이 전년도 13억 6천여만원에서 2억 6천여만원으로 감소한 것은 평소 체납자에 대한 사전조치등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금년도 미수납액중 고질적 체납과 기타사유로 이월된 비율이 전체 이월액의 94.5%인 59억여원에 이르는등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세출부분

-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69.2%인 1,856억 6,426만원이 지출되고 709억 3천여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7억 8천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이중 이월액의 경우 2000년도 18%(349억원), 2001년도 21%(517억원), 2002년도에는 26%(709억원)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용액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27.6%에 이르는등 결코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없으나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사용잔액이(2001년도 27억여원, 2002년도 7억 5천여만원)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한 것은 사업의 철저한 사전분석등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나 과목해소 착오 등을 사유로 전용, 집행할 경우 자칫, 사업시기를 일실 할 수도 있는바 앞으로는 관련법규 연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기금 및 채무부분

- 2002년도말 채무액이 전년도 보다 66억 5천여만원이 감소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아직도 채무액이 192억여원이나 남아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출결산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지방채 원리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토록 하고 있으나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감채적립기금」 조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별도의 채무 감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議案番號	第 62 號
議決年月日	2003. 7. . (第 回)

2002 歲入歲出決算承認の件

提出者	瑞山市長
提出年月日	2003. 6. 11.

2002세입세출결산증인의 건

의안 번호	62
----------	----

제출년월일 : 2003. 6. 25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년도의 수입·지출업무에 반영·개선함으로써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능률성을 제고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골자

- 2002회계년도 결산현황(별첨)

첨부서류

-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 결산검사 의견서
-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순 서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 2
- 결 산 검 사 개 요 ----- 3
- '2002세입·세출결산현황 ----- 4
- '2002결산검사결과분석 ----- 5
- 검 사 결 과 지 적 사 항 ----- 14
-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보 고 서 ----- 32

결산검사의견서

서산시장 귀하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서산시의회로부터 위촉을 받아 200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2002회계연도 서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11개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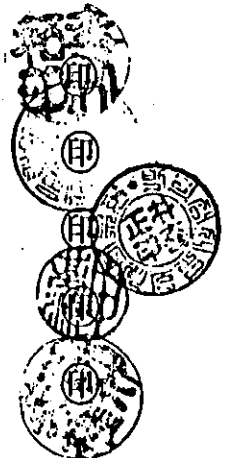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02년 12월 31일로 종료된 회계연도의 서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11개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별첨 지적사항(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의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2003년 6월 일

서산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서산시의회의원	이	문	석
위	원	김	성	관
위	원	박	희	정
위	원	신	기	원
위	원	정	영	권



결 산 검 사 개 요

2002회계년도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2002년도 서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 법인에 의하여 검사되었으므로 본 결산검사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의 수치가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치와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계성으로 인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수치도 검증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과정중 수행한 내용을 요약하면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사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이었습니다만, 상기 내용외에 지정 및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별도로 후술하였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현황

(단위 : 천원, %)

회계명	구분	예산현액 (A)	결산액		
			세입(B) (B/A)	세출(C) (C/A)	잉여금(D) (B-C)
총계		297,967,880	300,208,562 (100.8)	204,394,119 (68.6)	95,814,443 (32.2)
일반회계		268,383,938	270,580,752 (100.8)	185,664,260 (69.2)	84,916,492 (31.6)
특별회계	소계	29,583,942	29,627,810 (100.1)	18,729,859 (63.3)	10,897,951 (36.8)
	상수도사업	11,606,252	12,237,251 (105.4)	7,842,846 (67.6)	4,394,405 (37.9)
	하수도사업	5,281,717	5,559,609 (105.3)	2,379,471 (45.1)	3,180,138 (60.2)
	주택사업	805,182	805,233 (100.0)	426,275 (52.9)	378,958 (47.1)
	공영개발	183,310	183,794 (100.3)	1,100 (0.6)	182,694 (99.7)
	구획정리	1,345,619	1,346,283 (100.0)	827,202 (61.5)	519,081 (38.6)
	주차장사업	1,477,939	1,428,654 (96.7)	1,139,789 (77.1)	288,865 (19.5)
	새마을소득	249,417	265,168 (106.3)	123,487 (49.5)	141,681 (56.8)
	의료보호	850,974	853,223 (100.3)	836,286 (98.3)	16,937 (2.0)
	영세민생활안정	322,588	330,550 (102.5)	100,000 (31.0)	230,550 (71.5)
	농공단지	6,991,987	5,998,142 (85.8)	4,694,127 (67.1)	1,304,015 (18.7)
	농촌발전	468,957	619,903 (132.2)	359,276 (76.6)	260,627 (55.6)

2002 결산 결과 분석

□ 총 관

(단위 : 천원, %)

회계명 \ 구분	예산현액 (A)	결 산 액		
		세 입(B) (B/A)	세 출(C) (C/A)	잉여금(D) (B-C)
총 계	297,967,880	300,208,562 (100.8)	204,394,119 (68.6)	95,814,443 (32.2)
일반회계	268,383,938	270,580,752 (100.8)	185,664,260 (69.2)	84,916,492 (31.6)
특별회계	29,583,942	29,627,810 (100.1)	18,729,859 (63.3)	10,897,951 (36.8)

○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현액 297,967,880천원으로서

- 총 예산현액의 100.8%인 300,208,562천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의 68.6%인 204,394,119천원이 지출됨으로서 세입액의 32.2%인 95,814,44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음.

-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경우 268,383,938천원의 예산현액중 270,580,752천원이 수납되어 185,664,260천원을 지출하고, 84,916,492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29,583,942천원의 예산현액중 29,627,810천원이 수납되어 18,729,859천원을 지출하고 10,897,95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됨으로서 일반회계는 2001회계년도 결산시 잉여금보다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도 2001회계년도 결산시 잉여금보다 증가하였음.

□ 세입분석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A)	결정액			미수납액 처리	
		징수결정액(B) (B/A)	실수납액(C) (C/A)	미수납액(D) (B-C)	결손처분	이월액
총계	297,967,880	306,714,469 (103.0)	300,208,562 (100.8)	6,505,907 (2.1)	262,308 (4.0)	6,243,599 (96.0)
일반회계	268,383,938	276,523,789 (103.0)	270,580,752 (100.8)	5,943,037 (2.2)	261,972 (4.4)	5,681,065 (95.6)
특별회계	29,583,942	30,190,680 (102.1)	29,627,810 (100.2)	562,870 (1.9)	336 (0.1)	562,534 (99.9)

-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68,383,938천원보다 8,139,851천원을 초과한 276,523,78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70,580,75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5,943,037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261,972천원을 결손처분하고, 5,681,065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29,583,942천원보다 606,738천원을 초과한 30,190,680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9,627,81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562,870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336천원을 결손처분하고, 562,534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음.

□ 세출분석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A)	결산액			
		지출원인행위액(B) (B/A)	지출액(C) (C/A)	이월액(D) (D/A)	불용액(E) (E/A)
총계	297,967,880	207,228,498 (69.6)	204,394,119 (68.6)	73,629,123 (24.7)	19,944,638 (6.7)
일반회계	268,383,938	188,479,639 (70.2)	185,664,259 (69.2)	70,934,162 (26.4)	11,785,517 (4.4)
특별회계	29,583,942	18,748,859 (63.4)	18,729,860 (63.3)	2,694,961 (9.1)	8,159,121 (27.6)

- 일반회계 예산현액중 188,479,639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그중 185,664,25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70,934,162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명시이월 37,065,310천원, 사고이월 2,815,379천원,
계속비 31,053,473천원이며, 나머지 11,785,51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현액중 18,748,859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8,729,86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694,961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명시이월 500,000천원, 사고이월 19,000천원, 계속비 2,175,961천원
이며, 나머지 8,159,12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잉여금 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 여 금	비 고
총 계	300,208,562	204,394,119	95,814,443	
일반회계	270,580,752	185,664,260	84,916,492	
특별회계	29,627,810	18,729,859	10,897,951	

○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95,814,443천원임.

- 일반회계의 잉여금중 명시이월은 37,065,310천원이고, 사고이월 2,815,379천원, 계속비이월 31,053,473천원, 보조금사용잔액 727,167천원, 순세계 잉여금 13,255,163천원으로 총 84,916,492천원이 잉여금임.
- 특별회계의 잉여금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394,405천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 3,180,13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78,958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82,694천원, 구획정리특별회계 519,081천원, 주차장특별회계 288,865천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141,681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6,937천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230,550천원, 농공단지특별회계 1,304,015천원, 농촌발전특별회계 260,627천원으로 총 10,897,951천원이 잉여금임.

□ 이월액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총 계	73,629,123	37,565,310	2,834,379	33,229,434
일 반 회 계	70,934,162	37,065,310	2,815,379	31,053,473
특 별 회 계	2,694,961	500,000	19,000	2,175,961

○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73,629,123천원임.

- 일반회계의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37,065,310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815,379천원, 계속비 이월은 31,053,473천원으로 총 70,934,162천원이 이월되었음.
- 특별회계의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500,000천원, 사고이월은 하수도특별회계 19,000천원, 계속비 이월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2,175,961천원으로 총 2,694,961천원이 이월되었음.

□ 제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300,208,562	270,580,752	29,627,810
지	방 세	33,660,552	33,660,552	0
세외수입	소 계	103,292,207	76,201,097	27,091,110
	경상적세외수입	13,038,608	7,204,329	5,834,279
	임시적세외수입	90,253,599	68,996,768	21,256,831
지	방 교 부 세	76,204,000	76,704,000	0
지	방 양 여 금	17,393,046	17,393,046	0
재	정 보 전 금	7,106,332	7,106,332	0
보조금	소 계	62,052,425	59,515,725	2,536,700
	국 고 보조금	39,030,482	37,753,712	1,276,770
	시·도비보조금	23,021,943	21,762,013	1,259,930
지	방 채	0	0	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204,394,119	185,664,260	18,729,859
인	건 비	24,985,747	24,050,858	934,889
물	건 비	24,932,878	22,790,257	2,142,621
이	전 경 비	40,158,926	37,210,103	2,948,823
자	본 지 출	98,748,390	94,528,526	4,219,864
용	자 및 출 자	766,000	0	766,000
보	전 재 원	5,370,921	830,860	4,540,061
내	부 거 래	7,780,572	4,680,572	3,100,000
예	비 비 및 기타	1,650,685	1,573,084	77,601

□ 세입금 불납 결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무 재 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기 타
계	262,308	118,962	0	15,065	128,281
일반회계	261,972	118,962	0	15,065	127,945
특별회계	336	0	0	0	336

□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거소불명	무 재 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 타
계	6,243,598	258,308	81,564	3,364,574	0	2,539,152
일반회계	5,681,065	256,128	31,971	3,045,844	0	2,347,122
특별회계	562,533	2,180	49,593	318,730	0	192,030

□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말 현재액	2002년도 발생액	2002년도 소멸액	2002년말 현재액
합	계	5,174,791	3,101,217	1,993,130	6,282,877
일	반 회 계	230,758	36,120	678	266,200
특 별 회 계	소 계	4,700,643	2,999,632	1,975,672	5,724,602
	새 마을	866,100	115,000	148,500	832,600
	영 세 민	842,473	261,397	111,804	992,066
	주 택	1,699,441	1,862,465	1,161,687	2,400,219
	농 촌	1,288,151	751,812	546,718	1,493,245
	의 료 급 여	4,478	8,958	6,963	6,472
기 금	여성발전복지	243,390	15,465	16,780	242,075
	노 인 복 지	0	50,000	0	50,000

□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말 현재액	2002년도 발생액	2002년도 소멸액	2002년말 현재액
합	계	25,875,000	841,000	7,499,470	19,216,530
일	반 회 계	6,870,000	841,000	2,540,874	5,170,126
특 별 회 계	소 계	19,005,000	0	4,958,596	14,046,404
	공 기 업	15,136,000	0	2,036,314	13,099,686
	주 택	681,000	0	156,282	524,718
	농 공 단 지	3,188,000	0	2,766,000	422,000

□ 수지 및 재정력

구 분	현 년 도 (천원)	전 년 도 (천원)	증 감 (천원)	구 분	현 년 도	전 년 도
세입총액	270,580,752	241,080,202	29,500,550	자립도	40.60%	36.62%
세출총액	185,664,260	177,969,180	7,695,080	재정력 지 수	27.74%	26.56%
차인잔액	84,916,492	63,111,022	21,805,470	경상수지 비 율	47.63%	45.08%
조상충용 총 당 금				세입세출 총당비율	92.86%	92.84%
잉여금사용 채무상환액				지 방 채 상환비율	7.49%	8.65%
실질수지	84,916,492	63,111,022	21,805,470	재정계획 운영비율	98.09%	93.84%
1 인 당 재정규모	1,253	1,182	71	세입예산 반영비율	98.66%	99.80%
1 인 당 세부담액	1,826	1,601	225	투 자 비 비 율	65.00%	68.20%
채무현재액	4,462,000	5,934,000	△1,472,000	자체수입 증 감 율	102.00%	90.11%
적립금총액 (기금전출금)	527,733	753,533	△225,800	경상경비 증 감 율	109.00%	110.35%

검사결과 지적사항

1. 시금고 일계표 작성 부적정

○ 현 황

(단위 : 원)

구 분	결 산 서	시금고일계표	비 고
과오납반환금	205,261,070	121,501,780	83,759,290
수 입 액	270,786,012,710	270,702,253,422	83,759,288

시 수입의 추계 및 예산의 성립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금고의 일계표는 정확하게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산서와 상위하게 작성된 것은 시출납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 비고란 차액(2원)이 발생한 것은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의하여 절사처리 한 사항임

○ 조치의견

앞으로 시금고 일계표 작성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물품관리 부적정(보건소)

○ 현 황

구 분	대 장	실 수 (카드)	비 고
고 압 멸 균 기	5	11	
치과 X 선 장치	16	12	
전 자 복 사 기	15	12	

물품관리자는 취득한 재산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관리함으로써 비품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대장상 숫자와 실수와 상위하여 부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조치의견

앞으로 물품 취득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3. 특별회계 세출 예산편성 부적정

○ 현 황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2,864,419,000원 전액 불용처리

사업의 활용방안 등 사전 분석 미흡으로 과다한 금액이 예비비로 책정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서 예산편성시 사업 추진의 여부 등을 정밀 파악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적기에 투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은 잘못된 사항임

○ 조치의견

앞으로는 예비비 활용시 정확한 판단하에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사업 추진이 어려울시 추경등에 반영하여 타 회계로의 전출 등 예산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적정

○ 현 황

- 예산액 : 1,345,619,000원
- 불용액 : 518,416,000원 (39%)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하나 사업을 과다예측 하는 등 사전 분석미흡으로 불용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건전재정 운영을 하지 못한 사례임

○ 조치의견

사업의 완급이나 예산편성 지침등을 숙지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임

5. 사고이월 부적정

○ 현 황

- 갈산1통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이월금 : 100,000천원

2001년도 예산(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2002년도에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다시 사고이월한 것은 1년동안 사업을 방치한 것으로 절절치 못함

- 다목적회관건립의 경우 하반기 부지매입 등 사업여건이 충족되었음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으며(447,342천원)
- 해미읍성보수공사의 경우 문화재청의 승인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없이 이월되었으며(137,999천원)
-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희망하는 읍·면·동이 없다는 이유로 본 사업이 이월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 볼 수 없음(140,555천원, 2003년도 운산면으로 결정)

○ 조치의견

예산을 제상할 때에는 정확한 예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도 사업시기를 철저하게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집행, 이월 또는 다음추경에 삭감조치하여 남은 예산 등을 필요한 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이월사업의 최소화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6. 2002년도 신년하례회 개최 보조금 지급 부적정

○ 현 황

〈2002. 1. 2 신년하례회 개최 및 보조금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계 획 내 용	보 조 금 지 급 내 역
총 소요 예산 : 7,120	총 소요 예산 : 7,120
서산시보조금 : 4,300	서산시보조금 : 4,300
문화원부담금 : 2,820	서산시보조금 : 2,820

2002년도 신년하례회 개최에 있어 총 소요예산액 7,120천원 중 서산시 보조금 4,300천원, 문화원 부담금 2,820천원으로 공동주관하는 2002년도 신년하례회 개최계획을 수립 시행 후 2002. 1. 9일자로 시 보조금 4,300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여 후인 2002. 7. 12일자로 서산시장이 신년하례회 부족분 보조금을 추가 신청토록 공문을 문화원장에게 발송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2. 7. 16일자로 문화원장의 보조금 추가신청을 받아 2002. 7. 23일자로 추진계획상의 문화원 부담금 2,820천원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한 것은 보조금 지급의 목적 및 당사자의 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는 잘못된 사항임

○ 조치의견

지방재정법 제14조 등 관련법령의 숙지 및 엄격한 집행으로 보조금 지급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7. 2002년도 공유재산 매각 수입처리 부적정

○ 현 황

(단위 : 천원)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비 고
1,789,744	1,732,199	57,544	

- 2002.12.31자로 수의계약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한 이병수의 잔금 납부일이 2003.2.12일 임에도 57,544천원을 미수납액으로 분류함
- 2002.2.11자로 수의계약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한 김양순의 잔금 납부일이 2003.2.11일부로 2002년도 수납액으로 분류함
- 2002.10.23자 시유잡종재산 매각 공유재산심의회 부의 당시, 서산시 석림동 648-13 소재 건축물에 대한 2002.10.7일자 조사 북명서에 첨부된 토지건물 과세대장상에는 그 소유자가 이태희(380215-2470611, 1998년 2월 24일 망 부 노성택으로부터 상속)로 되어 있음에도 조사 북명서에는 그 소유자를 서산시 석림동 648-19 이병수로 확인하고 있으나, 이병수가 이태희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2.12.13일자로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5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위 이병수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음.

○ 조치의견

예산관련법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의거 과목 구분 등의 정확을 기해 세입세출결산을 하여야 함에도 과목구분을 잘못하여 당해연도 세입분 57,544천원을 미수납액으로 년도 이월시킨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수의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서산시 석남동 648-13 소재 건물소유자에 대한 토지건물과세대장 및 2003년도 건물대장 변동내역서 등재사항 등 세원관리의 정확화를 기하고, 실소유자가 이병수라면 그에 대한 취득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 바람

8.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불용액 과다 발생)

○ 현 황

(단위 : 천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3,185,711	1,825,561	1,213,707	553,875	57,979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꽃길조성(도시과) 437천원
- 해일피해복구 시비부담액(축산해양과) 4,507천원
- 한해 수돗물(식수) 부족지역 식수원 개발 75,000천원 중 36,099천원
- 태풍루사 피해복구(농약대) (농림과) 8,918천원
- 태풍루사 피해복구(대과대등) (농림과) 7,728천원 등이 있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토록 하고 있는 바, 소요액판단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하여 요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안된 것으로 잘못된 사항임

○ 조치의견

앞으로는 소요액 판단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하여 요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9.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운영 부적정

○ 현 황

〈일반회계 2001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및 2002 국·도비 보조금 반환현황〉

(단위 : 천원)

2002년도 예산액	2002년도 반환액	2001년도 결산액	예산대결산 차액	불용액	비고
2,750,597	1,573,084	2,712,376	38,221	1,177,513	

국·도비 보조금 반환의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사용잔액만 편성하여야 하고 또한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01 회계연도 결산액보다 38,221천원이 과다편성되었으며 2002 회계연도 반환금 예산액 대비 1,177,513천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킴으로 예산운영이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 조치의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편성시에는 전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당해연도에 반환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결산에 대하여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결산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10. 인건비(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과다 계상

○ 현 황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지방의회운영	기본급	340,440,000	2,288,910	0.67
	수당	96,690,000	2,478,550	2.56
	복리후생비	126,818,000	1,078,630	0.85
예산관리	기본급	12,933,192,000	49,659,310	0.38
	수당	3,024,950,000	132,280,500	4.37
	복리후생비	4,390,413,000	143,362,150	3.26
자치행정	수당	1,062,892,000	322,872,950	30.37
문화회관관리	기본급	167,164,000	580,100	0.34
	수당	39,670,000	809,050	2.04
	복리후생비	62,746,000	976,920	1.56
시립도서관관리	기본급	312,549,000	22,483,420	7.19
	수당	89,462,000	317,690	0.35
	복리후생비	115,000,000	2,640,520	2.29
종합운동장운영	기본급	203,052,000	16,359,920	8.06
	수당	52,830,000	2,653,430	5.02
	복리후생비	86,485,000	12,509,150	14.46
보건환경	기본급	1,754,150,000	1,764,850	0.1
	수당	378,804,000	5,692,270	1.50
	복리후생비	656,599,000	10,032,240	1.5
상하수 관리	기본급	63,537,000	200,310	0.32
	수당	15,241,000	165,890	1.09
	복리후생비	23,958,000	1,012,030	4.22
종합사회복지	기본급	213,760,000	5,125,180	2.39
	수당	55,942,000	2,601,990	4.65
	복리후생비	77,440,000	31,290	0.4
농촌진흥	기본급	792,297,000	469,880	0.06
	수당	185,747,000	2,671,680	1.44
	복리후생비	291,243,000	2,431,940	0.83

- 기본급과 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정액이 규칙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음
- 인건비 계산시 담당자의 주의부족에 의해 예산이 과다 책정됨
- 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있어 정원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현원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불용액 발생
- 부서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력이 과거에 비해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산업화시대의 기준에 따라 정원이 편성되어 있다보니 인건비 계산상 문제 발생
- 부서별로 인건비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겠다는 무분별한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 불용액 과다 발생
-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처리함

○ 조처의견

인건비 등의 계상시 타당성 분석 및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기해 예산편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불용액이 최소로 발생되도록 함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시 부서별 담당자들에 대한 통일적인 인건비 계산 교육이 필요하고, 불용액 예상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조정하는 등 적절한 예산운영을 하기 바람

11.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 미수납액 과다 발생

○ 현 황

(단위 : 원)

과목	징수결정액	예산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과태료 수입	1,072,458,430	279,000,000	476,417,900	596,040,530	다음연도 이월

(단위 : 천원)

미수납액	사 유		기 타
	고 질 적 체 납		
569,040	289,704	책임보험료 과태료 : 191,306	306,336
		검사 과태료 : 66,100	
		기 타 : 32,298	

- 차량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권 이전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잘못해 책임보험료 부과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책임보험료 과태료 수납을 위해 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되어 있으나 담당직원 1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업무 과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회계연도내의 세입분야에 있어 미수납액이 상당부분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과소책정되어 지방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 재정운영의 노력이 미흡함

○ 조치의견

차량소유권 이전과 책임보험료 가입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과태료 유발 요인 사전 방지대책을 추진하기 바라며, 과태료 징수 확보 및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과다한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 바람

아울러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미수납액에 대하여 사유별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채권 확보등 현실적인 수납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앞으로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12. 각종 불용액 처리 미흡(보건소)

○ 현 황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불용액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615,056,000	20,154,480
보 조 사 업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49,285,000	31,373,230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366,315,000	30,190,690

- 보건위생관리의 경우 해당 사업대상자 미발생으로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1%인 31,373천원으로 과다 발생
- 공보의들의 처방 차이로 다량의 약을 미리 구입하기 어렵고 기자재 및 소모품 미구입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의 불용액 50,000천원 상당(경상적 경비 20,154천원, 보조사업 30,190천원) 발생

○ 조치의견

일반운영비의 대상사업이 주로 영세민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부의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본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바라며, 구매약품의 목록 다양화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13. 공익근무요원의 부적절한 수급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

○ 현 황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
종합운동장운영	공익근무요원	23,538,000	10,545,110	
환경관리	보 상 금	38,039,000	17,380,940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계상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및 해당부서의 행정예측 및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잘못된 사항임

○ 조치의견

앞으로 인력수급계획의 철저한 파악과 분석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은 물론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4.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율 저조

○ 현 황

(단위 : 천원)

년도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비고
2001년도	1,414,171	1,370,772	1,282,592	93.6	
2002년도	1,477,939	1,587,814	1,428,654	90.0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율이 전년도 93.6%에서 90.0%로 떨어지고, 미수납자의 96.7%가 고질적 채납으로 나타난 것은 징수 의지의 부족 및 채권확보의 소홀에서 오는 사항으로 건전재정 확충 노력이 미흡함

○ 조치의견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채권확보 및 징수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15. 기타 지적 및 권고사항 종합

○ 현황 및 조치의견

- 사회단체 및 임의보조단체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지급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예, 인터넷 및 지역신문 활용 공모 방법 채택 등)
- 해당기관의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하는 바, 대부분 간이세금 계산서가 증빙서류로 첨부되어 있고 일부단체의 경우 영업기관의 직인이 찍혀지 않은 출처불명의 계산서로 정산이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바, 보다 엄격한 정산 관리 및 지도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 국가기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직까지 단식부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예산 및 결산서가 난해하고 일일이 대조 및 확인해야 하는 등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으로,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및 책임행정 강화하고 단식부기제도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식 부기 방식 도입을 강구하기 바람
(예, 강남구, 부천시 사례)
-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목 과다 발생(이월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판단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전례답습적 또는 점증주의적인 예산편성을 우선 시행함에 따라 세출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과다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임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 해당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타당성을 확인·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예산편성 및 운용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예, 환경관리 민간자본이전, 상하수관리 시설비, 사회복지 재료비·시설부대비·자치단체간부담금, 지적관리 전산개발비, 지역사회개발 민간자본보조, 축수산진흥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촌진흥 감리비·시설부대비, 지역경제개발 민간대행사업비, 건설하천관리 일반운영비·시설비·전산개발비 외 다수 발생)

검사결과 우수사항

1. 보조금 사용잔액 감소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전 년 도	2,714,517	2,382,996	331,521	2001년도
당 해 년 도	750,846	539,411	211,435	2002년도
감 소 액	1,963,671	1,843,585	120,086	

국·도비 사용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은 금액이 감소한 것은 사업의 철저한 사전분석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됨

○ 조치의견

앞으로도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기해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잉여금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해당부서에 전파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2. 세입금 불납결손 감소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무 세 산	시효완성	공매무배당	기 타
전 년 도	1,368,381	376,621	5,699	986,061	
당해년도	262,308	118,962	15,065	0	128,281
감 소 액	△1,106,073	△257,659	9,366	△986,061	128,281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은 금액이 감소한 것은 채납자에 대한 사전 조치 등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 조치의견

앞으로도 채납자에 대한 재산발굴등 사전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여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 시 번호	지 적 사 항	처리부서	비 고
1	일계표 작성 부적정	세 무 과 시 금 고	
2	물품관리 부적정	보 건 소	
3	특별회계(하수도)세출 예산편성 부적정	상하수도사업소	
4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적정	도 시 과	
5	사고 이월 부적정	건 설 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6	2002년도 신년하례 개최보조금 지급 부적정	자치행정과	
7	2002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처리 부적정	세 무 과	
8	예비비지출의 부적정 (불용액 과다발생)	도 시 과 축산해양과 상하수도사업소 농 립 과	
9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운영 부적정	기획감사담당관실	

지 시 번 호	지 적 사 항	처 리 부 서	비 고
10	인건비(기본급,수당,복리후생비) 과다계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의회사무국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농업기술센터	
11	임시적 세외수입증 과태료 수입미수 납액 과다발생	세 무 과	
12	각종 불용액 처리 미흡	보 건 소	
13	공익근무요원 부적절한 수급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발생	환경 보호과 문화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	
14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율 저조	교통행정과	
15	기타 지적 및 권고사항 종합	기획감사담당관실 해당각실과(기관)	공 통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우수사항

지시 번호	우 수 사 항	해 당 실 과	비 고
1	보조금 사용잔액 감소	각 실 과 사 업 소	공 통
2	세입금 불납결손 감소	세 무 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실 과 (기관)	조치 결과여부									
1	시금고 일계표 작성 부적정	<p>○ 시수입의 추계및예산의 성립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금고의 일계표는 정확하게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결산서와 상이하게 작성된 것은 시출납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업무 처리에 산증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p> <p>(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결 산 서</th> <th>시 금 고 일 계 표</th> </tr> </thead> <tbody> <tr> <td>과오납안환금</td> <td>205,261,070</td> <td>121,501,780</td> </tr> <tr> <td>수 입 액</td> <td>270,785,012,710</td> <td>270,702,253,422</td> </tr> </tbody> </table> <p>* 수입액 차액(2원)이 발생한 것은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의하여 절사처리한 사항임.</p>	구 분	결 산 서	시 금 고 일 계 표	과오납안환금	205,261,070	121,501,780	수 입 액	270,785,012,710	270,702,253,422	<p>○ 지적사항과 같이 결산서와 일계표의 계수가 상이한 것은 과오납 금액이 당일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당일 수입분에서 차감하여 지급함으로써 일계표에 나타나지 않으며, 과오납 금액이 당일 수입금 보다 큰 경우에는 시세입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여 시금고 일계표와 결산액이 부적정하게 작성됨.</p> <p>○ 금년 4월 1일(세입결산작성시 문제점으로 도출)부터 일계표 작성을 적의하게 정정처리하고 있으며, 시금고 일계표 작성에 누수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p>	세무과 시금고	여
구 분	결 산 서	시 금 고 일 계 표												
과오납안환금	205,261,070	121,501,780												
수 입 액	270,785,012,710	270,702,253,422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당 과 실 (기관)	조치 결과 여부
2	물품관리부적정	<p>○ 물품관리자는 취득한 재산을 기록하여 관리함으로써 비품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대장상 숫자와 실수가 상이하여 부정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p> <p>* 현 황</p> <p>○ 고 압 멸 균 기 : 대장 5 실수 11</p> <p>○ 치 과 X선 장치 : 대장 16 실수 12</p> <p>○ 전 자 복 사 기 : 대장 15 실수 12</p>	<p>○ 앞으로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정확을 기하겠으며,</p> <p>○ 현 보유 물품에 대해 본소 및 지소, 진료소에서 사용중인 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를 실시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p>	보건소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당 과 실 (기 관)	조치 결과 여부
3	특별회계세출 예산편성 부역정 (하수도특별회계)	<p>○ 현황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2,864,419천원 전액 불용처리</p> <p>○ 사업의 활용방안 등 사전 분석 미흡으로 과다한 금액이 예비비로 책정 불용액 으로 처리됨으로서 예산편성시 사업 추진의 여부 등을 정밀 파악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작기에 투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은 잘못된 사항임.</p>	<p>○ 2002회계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가 5,281,717,000원으로</p> <p>-하수종말처리장간위탁비 : 1,238,000천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0,000,000원 -기타 하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부담금등 124,298,000원 -예비비 2,864,419,000원의 세출예산중</p> <p>-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 사용료 수입 증가로 전액 불용처리된 예비비 2,864,419,000원이 대하여는 200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당초세출 예산에 2,000,000,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예비비 불용예산을 억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음.</p>	상하수도 사업소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실 과 (기관)	조치 결과 여부
4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적정	<p>○현 황</p> <p>-예산액 : 1,345,619,000원</p> <p>-불용액 : 518,416,000원 (39%)</p> <p>사업을 추진할때는 신출기초를 정확히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하나 사업을 과다하게 예측하는등 사전 분석 미흡으로 불용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건전제정 운영을 하지 못한 사례임</p>	<p>○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업시행 요인 미 발생에 따른 불용액이며,</p> <p>○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삭감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음.</p>	도시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실 과 (기관)	조치 결과 여부
5	사고이월 부 적 정	<p>○현 황</p> <p>-갈산1통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이월금 : 100,000천원</p> <p>-2001년도 예산(2회추경)에서 명사이월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2002년도에 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한 것은 1년동안 사업을 방치 한 것으로 적절치 못함.</p> <p>○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정확한 예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도 사업시기를 철저히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집행, 이월 또는 다음추경에 삭감조치 하여 남은 예산 등을 필요한 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이월사업의 최소화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p>	<p>○갈산1통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는 2001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발주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의 무상·사용승락이 안되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공사를 중지 2003년에 사업추진하게 되어 사고 이월 되었는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음.</p>	건설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해당실(기관)	조치결과
5	사고이월 부적정	<p>○ 다목적회관 건립의 경우, 허반기 부지매입 등 사업여건이 충족되었음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음.(이월액 447,342천원)</p> <p>(○ 예산을 재상할 때에는 정확한 예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도 사업시기를 철저히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집행, 이월 또는 다음추경에 삭감조치하여 남은 예산 등을 필요한 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이월사업의 최소화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p>	<p>○ 추진과정</p> <p>-2003. 2. 15 : 공시입찰 공고</p> <p>-2003. 2. 22 : 공시입찰 사업자 선정</p> <p>-2003. 3 : 공시계약 체결</p> <p>* 공사기간 2003. 3. 20 ~ 9.30</p> <p>○ 앞으로 보조사업비 예산계상시 사업시기를 철저히 분석 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보조단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p>	자치행정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해당실시(기관)	조치결과부
5	사고이월 부적정	<p>○해미읍성 보수공사의 경우 문화재청의 승인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없이 이월되었음. (137,999천원)</p> <p>(○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정확한 예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도 사업시기를 철저하게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집행, 이월 또는 다음추경에 삭감조치 하여 남은 예산 등을 필요한 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이월사업의 최소화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p>	<p>○문화재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해미읍성 보수공사는 보조금이 지연 교부결정('02.5.18)되었으며 설계 완료('02.4.12)후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사업저침 승인('02.9.10)을 득한후 공사를 발주('02.10.16)하였고 공사기간이 120일간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이월되었음.</p> <p>○향후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및 사업저침 승인기간이 단축되도록 충청남도 및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이월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p>	문화 관광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번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실 과 (기관)	조치결과부
5	사고이월 부 적 정	<p>○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희망하는 읍·면·동이 없다는 이유로 본 사업이 이월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 볼 수 없음. (140,555천원 2003년도 운산면으로 결정)</p> <p>(○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정확한 예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도 사업시기를 철저히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집행, 이월 또는 다음추경에 삭감조치 하여 남은 예산 등을 필요한 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이월사업의 최소화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p>	<p>○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주민호응도가 낮아 사업 선정이 늦어져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으며, ○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p>	자치행정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실 과 (기관)	조치결과부여
6	2002년도 신년하례회 개최보조금 지급부적정	<p>○2002년도 신년 하례회 개최에 있어 총소요예산액 7,120천원중 서산시 보조금 4,300천원, 문화원 부담금 2,820천원으로 공동주관하는 2002년도 신년하례회 개최계획을 수립 시행후</p> <p>2002 1 9일자로 시 보조금 4,300천원을 지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여 후인 2002.7.23일자로 추진계획상의 문화원 부담금 2,820천원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한 것은 보조금 지급의 목적 및 당사자의 부담의 원칙에 어긋남.</p>	<p>○신년하례회 개최를 민간단체에서 개최, 추진토록 당사자 부담 원칙을 확실히 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p> <p>○아울러,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하여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p>	자치행정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당 과 실 (기 관)	조치 결과 여부						
7	2002년도 공유 재산 매각수입 처리 부적정	<p>○2002. 12. 31자로 수의계약에 의거 공유재산에 취득한 이병수의 잔금 납부일 2003.2.12 일임에도 잔금 57,544천원을 미수납액으로 연도 이월 시킨.</p> <p>(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장수결정액</th> <th>수 납 액</th> <th>미 수 납액</th> </tr> </thead> <tbody> <tr> <td>1,789,744</td> <td>1,732,199</td> <td>57,544</td> </tr> </tbody> </table> <p>○서산시 석림동 648-13번지 소재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변동시 취득세 미부과</p>	장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액	1,789,744	1,732,199	57,544	<p>○공유재산매각수입 부과부서에서 작성한 고지서상의 회계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입년도를 부적 정하게 처리하였는바 앞으로는 부과고지 및 세입처리시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하겠음.</p> <p>○서산시 석림동 648-13번지 소재 건축물의 실제 소유자는 이병수로 미부과된 취득세에 대하여는 2003. 6. 23 파세예고 후 2003.7월에 직권 파세토록 하겠음.</p>	세무과	여
장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액									
1,789,744	1,732,199	57,544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당 과 실 (기 관)	조 치 결 과 여 부
8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불용액과다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면도 국제 꽃리랍희 꽃길조성 437천원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 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토록 하고 있는데, 소요액판단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하여 요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안된 것으로 잘못된 사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예비비 요구시 정확한 산출 기초를 근거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음. 	도시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실 과 (기 관)	조치결과 여부
8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불용액과다발생)	<p>○ 불용내역</p> <p>- 헤일 피해복구 시비 부담액 4,507천원</p> <p>(·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해당토록 하고 있는바, 소요액판단시 정확한 신출기초에 의하여 요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안된 것으로 잘못된 사항임.)</p>	<p>○ 헤일 피해복구 사업비 보조금 421,680천원(시비 72,445천원)은 시설비 및 종묘대로서 농어업재해 대책법 규정에 의거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나,</p> <p>○ 복구시 종묘 구입 단가조정으로 26,948천원(시비 4,507천원)사용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금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p>	축산 해양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당 과 실 (기관)	조치 결과 여부
8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불용액과다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내역 - 한해 수돗물(식수) 부족지역 식수원 개발 75,000천원증 36,099천원 <p>(·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 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토록 하고 있는바, 소요액판단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하여 요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안된 것으로 잘못된 사항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해 수돗물(식수) 부족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75,000천원을 대행관정 개발을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였 으나, ○ 기존 지하관정 활용으로 36,09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금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 	상하수도 사업소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해당과실(기관)	조치결과여부
8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불용역과다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풍 루사 피해 복구비 : 16,646천원 (농약대, 대파대등) <p>(·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토록 하고 있는바, 소요액판단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하여 요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안된 것으로 잘못된 사항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소요액 판단시 정확한 산출자료에 의한 복구비를 요구하여 금번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였음. 	농림과	어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해당실적(기관)	조치결과여부
9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 운영 부적정	<p>○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의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사용잔액만 편성하여야 하고 또한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1회계 결산액 보다 38,221천원이 과다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반환금 예산액 대비 1,177,513천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킴으로 예산 운영에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함</p>	<p>○결산 해당연도 이전의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보조금 사용잔액은 당해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반환금을 편성하고 반환하고 있으나 -2001년도 이전에 종료된 사업의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2001년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반환금을 회계연도 폐쇄시까지 반환하지 못하여 2002년도 반환을 위해 부득이 결산액을 초과하여 편성되었고 -2001년도 농림분야 폭설피해 복구사업비에 대한 도외의 최종결산이 2003년도도 미루어진 관계로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부득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음</p> <p>○앞으로는 예산편성연도에 반환하여 예산서와 결산서의 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p>	기획감사담당관실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당 과 실 (기관)	조치결과(여부)																
10	인건비불응액 과다발생 (기본급,수당, 부리후생비)	<p>○ 현 황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목</th> <th>예산현액</th> <th>불응액</th> <th>비 율</th> </tr> </thead> <tbody> <tr> <td>예산관리 기 본 급</td> <td>12,933,192,000</td> <td>49,659,310</td> <td>0.38</td> </tr> <tr> <td>수 당</td> <td>3,024,950,000</td> <td>132,280,500</td> <td>4.37</td> </tr> <tr> <td>부리후생비</td> <td>4,390,413,000</td> <td>143,352,150</td> <td>3.26</td> </tr> </tbody> </table> <p>기본급과 수당 및 부리후생비의 경우 일정액이 규칙적, 반복적 으로 지출되는 경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편성 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음.</p> <p>-인건비 계산시 담당자의 주의부족에 의해 예산이 과다 책정됨. -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있어 정원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현원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불응액 발생. -부서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력이 과거에 비해 더필요하거나 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산업화시대의 기준에 따라 정원이 편성되어 있다보니 인건비 계산상 문제 발생. -부서별로 인건비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았다는 무분별한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 불응액 과다 발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이하게 처리함.</p>	과 목	예산현액	불응액	비 율	예산관리 기 본 급	12,933,192,000	49,659,310	0.38	수 당	3,024,950,000	132,280,500	4.37	부리후생비	4,390,413,000	143,352,150	3.26	<p>○ 인건비(기본급, 수당, 부리후생비) 관련 총예산 42,838,550천원 대비 불응액 75,530천원이 발생하여 불응율이 1.7%를 차지하고 있음. 불응율 1.7%는 비교적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 앞으로 더욱 철저한 인력관리들 통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관련예산의 불응액이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기획감사 담당관실</p>	여
과 목	예산현액	불응액	비 율																		
예산관리 기 본 급	12,933,192,000	49,659,310	0.38																		
수 당	3,024,950,000	132,280,500	4.37																		
부리후생비	4,390,413,000	143,352,150	3.26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항 사	해 실 과 (기 관)	조 치 과 (부)																
10	인건비불용액 과다발생 (기본급,수당, 부리후생비)	<p>○ 현 황 (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목</th> <th>예산현액</th> <th>불용액</th> <th>비 율</th> </tr> </thead> <tbody> <tr> <td>지방의회</td> <td>340,440,000</td> <td>2,288,910</td> <td>0.67</td> </tr> <tr> <td>운 영</td> <td>96,690,000</td> <td>2,478,550</td> <td>2.56</td> </tr> <tr> <td></td> <td>부리후생비</td> <td>1,078,630</td> <td>0.85</td> </tr> </tbody> </table> <p>(-기본급과 수당 및 부리후생비의 경우 일정액이 규칙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편상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계산시 담당자의 주의부족에 의해 예산이 과다 책정됨 -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있어 정원증심으로 예산을 편상하고 현원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불용액 발생. -부서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력이 과구에 비해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신임사제의 기준에 따라 정원이 편성되어 있다보니 인건비 계산상 문제 발생. -부서별로 인건비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았다는 무분별한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 불용액 과다 발생. -추기경예산 편성시 이를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위하게 처리함) 	과 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 율	지방의회	340,440,000	2,288,910	0.67	운 영	96,690,000	2,478,550	2.56		부리후생비	1,078,630	0.85	<p>○ 앞으로 인건비등 계상시 타당성 분석 및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기해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불용액이 최소로 발생되도록 하겠음.</p>	의회 사무국	여
과 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 율																		
지방의회	340,440,000	2,288,910	0.67																		
운 영	96,690,000	2,478,550	2.56																		
	부리후생비	1,078,630	0.85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처 사 항	해 실 과 (기 관)	조치 결과								
10	인건비불응액 과다발생 (기본급,수당, 복리후생비)	<p>○ 현 황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목</th> <th>예산현액</th> <th>불응액</th> <th>비 율</th> </tr> </thead> <tbody> <tr> <td>자치행정</td> <td>1,062,882,000</td> <td>322,872,950</td> <td>30.37</td> </tr> </tbody> </table> <p>(-기본급과 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정액이 규칙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계산시 담당자의 주의부족에 의해 예산이 과다 책정됨 -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있어 정원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현원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불응액 발생. -부서에 따라 세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력이 과거에 비해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산업화시대의 기준에 따라 정원이 편성되어 있다보니 인건비 계산상 문제 발생. -부서별로 인건비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겠다는 무분별한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 불응액 과다 발생. -추기령예산 편성시 이를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위하게 처리함.) 	과 목	예산현액	불응액	비 율	자치행정	1,062,882,000	322,872,950	30.37	<p>○ '98년부터 시작된 구조 조정으로 현재까지 과원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 명예 및 조기퇴직을 시행하였으나 신항지를 예측할 수 없어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절감치 못하였음.</p> <p>○ 앞으로 여사한 사태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p>	자 치 행 정 과	여
과 목	예산현액	불응액	비 율										
자치행정	1,062,882,000	322,872,950	30.37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당 과 결 과 (기관)	조치 결과																
10	인건비불응액 과다발생 (기본급,수당, 부리후생비)	<p>○ 현 황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목</th> <th>예산현액</th> <th>불응액</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문화회관</td> <td>167,164,000</td> <td>580,100</td> <td>0.34</td> </tr> <tr> <td>관 리</td> <td>39,670,000</td> <td>809,060</td> <td>2.04</td> </tr> <tr> <td></td> <td>부리후생비</td> <td>976,920</td> <td>1.56</td> </tr> </tbody> </table> <p>(-기본급과 수당 및 부리후생비의 경우 일정액이 규칙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계산시 담당자의 주의부족에 의해 예산이 과다 책정됨 -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있어 정원증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현원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불응액 발생. -부서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력이 과다에 비해 더필요하거나 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신원화사제의 기준에 따라 정원이 편성되어 있다보니 인건비 계산상 문제 발생. -부서별로 인건비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았다는 무분별한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 불응액 과다 발생. -추가형예산 편성시 이를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하여 처리함) 	과 목	예산현액	불응액	비율	문화회관	167,164,000	580,100	0.34	관 리	39,670,000	809,060	2.04		부리후생비	976,920	1.56	<p>○차후에는 인건비 예산 편성시 정확한 신출기초로 효율적인 간접비용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담당자의 업무연선을 실시하도록 조치함</p>	문화회관	여
과 목	예산현액	불응액	비율																		
문화회관	167,164,000	580,100	0.34																		
관 리	39,670,000	809,060	2.04																		
	부리후생비	976,920	1.56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처 사 항	해 실 과 (기 관)	조 치 과 결 과																	
10	인건비불용액 과다발생 (기본급,수당, 부리후생비)	<p>○ 현 황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목</th> <th>예산현액</th> <th>불용액</th> <th>비 율</th> </tr> </thead> <tbody> <tr> <td>사업도서관</td> <td>312,549,000</td> <td>22,483,420</td> <td>7.19</td> </tr> <tr> <td>관 리</td> <td>89,462,000</td> <td>317,690</td> <td>0.35</td> </tr> <tr> <td></td> <td>부리후생비</td> <td>115,000,000</td> <td>2,640,520</td> <td>2.29</td> </tr> </tbody> </table> <p>(-기본급과 수당 및 부리후생비의 경우 일정액이 규칙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음.)</p> <p>-인건비 계산시 담당자의 주의를족에 의해 예산이 과다 책정됨</p> <p>-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있어 정원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현원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불용액 발생.</p> <p>-부서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력이 과거에 비해 더필요하거나 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산업사태의 기준에 따라 정원이 편성되어 있다보니 인건비 계산상 문제 발생.</p> <p>-부서별로 인건비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았다는 무분별한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 불용액 과다 발생.</p> <p>-추기정예산편성시 이를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이하게 처리함)</p>	과 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 율	사업도서관	312,549,000	22,483,420	7.19	관 리	89,462,000	317,690	0.35		부리후생비	115,000,000	2,640,520	2.29	<p>○ 앞으로 인건비의 예산편성 요구시 신출기초의 정확성을 기해 과다 계상되는 사액가 없도록 하여 불용액이 최소 발생되도록 하고, 사전 예상되는 불용액을 판단 추가 정정예산편성시 조정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민전을 기하겠음.</p>	시 립 도서관	여
과 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 율																			
사업도서관	312,549,000	22,483,420	7.19																			
관 리	89,462,000	317,690	0.35																			
	부리후생비	115,000,000	2,640,520	2.29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당 과 관 (기관)	조 치 결 과																
10	인건비불용액 과다발생 (기본급,수당, 부리후생비)	<p>○ 현 황 (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목</th> <th>예산현액</th> <th>불용액</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종합노동장 수 당</td> <td>283,052,000</td> <td>16,359,920</td> <td>8.06</td> </tr> <tr> <td>운 영</td> <td>52,830,000</td> <td>2,653,430</td> <td>5.02</td> </tr> <tr> <td>부리후생비</td> <td>86,485,000</td> <td>12,509,150</td> <td>14.46</td> </tr> </tbody> </table> <p>(-기본급과 수당 및 부리후생비의 경우 일정액이 규칙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은 보편 일관성이 없음. -인건비 계산시 담당자의 주의부족에 의해 예산이 과다 책정됨 -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있어 정원증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현원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불용액 발생. -부서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력이 과다에 비해 더필요하거나 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신원사태의 기준에 따라 정원이 편성되어 있다보니 인건비 계산상 문제 발생. -부서별로 인건비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았다는 무분별한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 불용액 과다 발생. -추기정예산편성시 이를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이하게 처리함)</p>	과 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종합노동장 수 당	283,052,000	16,359,920	8.06	운 영	52,830,000	2,653,430	5.02	부리후생비	86,485,000	12,509,150	14.46	<p>○ 불용액 발생 예후라면 추가 정정예산 편성시 조정 하고, 불용액이 최소로 발생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p>	문화체육 시설관리 사업소	여
과 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종합노동장 수 당	283,052,000	16,359,920	8.06																		
운 영	52,830,000	2,653,430	5.02																		
부리후생비	86,485,000	12,509,150	14.46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당 과 실 과 (기관)	조치 결과 여부																
10	인건비불용액 과다발생 (기본급,수당, 부리후생비)	<p>○ 현 황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목</th> <th>예산현액</th> <th>불용액</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급</td> <td>1,754,150,000</td> <td>1,764,850</td> <td>0.1</td> </tr> <tr> <td>수 당</td> <td>378,804,000</td> <td>5,682,270</td> <td>1.5</td> </tr> <tr> <td>부리후생비</td> <td>666,599,000</td> <td>10,082,240</td> <td>1.5</td> </tr> </tbody> </table> <p>(-기본급과 수당 및 부리후생비의 경우 일정액이 규칙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들 보면 일관성이 없음.</p> <p>-인건비 계산시 담당자의 주의부족에 의해 예산이 과다 책정됨</p> <p>-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있어 정원증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현원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불용액 발생.</p> <p>-부서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력이 과거에 비해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산업화시대의 기준에 따라 정원이 편성되어 있다보니 인건비 계산상 문제 발생.</p> <p>-부서별로 인건비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겠다는 무분별한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 불용액 과다 발생.</p> <p>-추기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이에게 처리함)</p>	과 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기본급	1,754,150,000	1,764,850	0.1	수 당	378,804,000	5,682,270	1.5	부리후생비	666,599,000	10,082,240	1.5	<p>○ 육아휴직자(7개월),퇴직자(4월)의 기본급, 수당, 부리후생비의 추경삭감 및 연가 보상일수의 산정 미흡으로 불용액 과다발생을 초래</p> <p>○ 앞으로는 인건비성 예산을 계상할시 정원과 현원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 예상시에는 반드시 추기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예산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p>	보건소	여
과 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기본급	1,754,150,000	1,764,850	0.1																		
수 당	378,804,000	5,682,270	1.5																		
부리후생비	666,599,000	10,082,240	1.5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해당실(기관)	조치결과																
10	인건비불용액 과다발생 (기본급,수당, 부리후생비)	<p>○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목</th> <th>예산현액</th> <th>불용액</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상허수</td> <td>63,537,000</td> <td>200,310</td> <td>0.32</td> </tr> <tr> <td>관 리</td> <td>15,241,000</td> <td>165,890</td> <td>1.09</td> </tr> <tr> <td>부리후생비</td> <td>23,988,000</td> <td>1,012,030</td> <td>4.22</td> </tr> </tbody> </table> <p>(-기본급과 수당 및 부리후생비의 경우 일정액이 규칙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위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성시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음.</p> <p>-인건비 계산시 담당자의 주의부족에 의해 예산이 과다 책정됨</p> <p>-현원과 장원에 차이가 있어 정원증인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현원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불용액 발생.</p> <p>-부서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력이 과거에 비해 더필요하거나 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산업화시대의 기준에 따라 정원이 편성되어 있다보니 인건비 계산상 문제 발생.</p> <p>-부서별로 인건비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겠다는 무분별한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 불용액 과다 발생.</p> <p>-추기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이하게 처리함.)</p>	과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상허수	63,537,000	200,310	0.32	관 리	15,241,000	165,890	1.09	부리후생비	23,988,000	1,012,030	4.22	<p>○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44조,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한 산출기초하에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음.</p>	상수도 사업소	여
과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상허수	63,537,000	200,310	0.32																		
관 리	15,241,000	165,890	1.09																		
부리후생비	23,988,000	1,012,030	4.22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해당과실(기관)	조치결과																
10	인건비불응액 과다발생 (기본급,수당, 부리후생비)	<p>○ 현황 (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목</th> <th>예산현액</th> <th>불응액</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종합사회</td> <td>213,760,000</td> <td>5,125,180</td> <td>2.39</td> </tr> <tr> <td>복지</td> <td>55,942,000</td> <td>2,601,990</td> <td>4.65</td> </tr> <tr> <td>부리후생비</td> <td>77,440,000</td> <td>31,290,04</td> <td>0.4</td> </tr> </tbody> </table> <p>(-기본급과 수당 및 부리후생비의 경우 일정액이 규칙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음.</p> <p>-인건비 계산시 담당자의 주의부족에 의해 예산이 과다 책정됨</p> <p>-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있어 정원증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현원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불응액 발생.</p> <p>-부서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력이 과자에 비해 더필요하거나 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산업화시대의 기준에 따라 정원이 편성되어 있다보니 인건비 계산상 문제 발생.</p> <p>-부서별로 인건비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겠다는 무분별한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 불응액 과다 발생.</p> <p>-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이하게 처리함.)</p>	과목	예산현액	불응액	비율	종합사회	213,760,000	5,125,180	2.39	복지	55,942,000	2,601,990	4.65	부리후생비	77,440,000	31,290,04	0.4	<p>○인건비등 각종 예산을 재상할 때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여 불응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음.</p>	종합사회 복지관	어
과목	예산현액	불응액	비율																		
종합사회	213,760,000	5,125,180	2.39																		
복지	55,942,000	2,601,990	4.65																		
부리후생비	77,440,000	31,290,04	0.4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해당과(기관)	조치결과																
10	인건비불응액 과다발생 (기본급, 수당, 부리후생비)	<p>○ 현황 (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목</th> <th>예산현액</th> <th>불응액</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급</td> <td>792,297,000</td> <td>469,880</td> <td>0.06</td> </tr> <tr> <td>수당</td> <td>185,747,000</td> <td>2,671,680</td> <td>1.44</td> </tr> <tr> <td>부리후생비</td> <td>291,243,000</td> <td>2,431,940</td> <td>0.83</td> </tr> </tbody> </table> <p>(-기본급과 수당 및 부리후생비의 경우 일정액이 규칙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계산시 담당자의 주의부족에 의해 예산이 과다 책정됨 -현원과 정원에 차이가 있어 정원증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현원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불응액 발생. -부서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력이 과거에 비해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신임화시대의 기준에 따라 정원이 편성되어 있다보니 인건비 계산상 문제 발생. -부서별로 인건비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놓겠다는 무분별한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 불응액 과다 발생. -추기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처리함) 	과목	예산현액	불응액	비율	기본급	792,297,000	469,880	0.06	수당	185,747,000	2,671,680	1.44	부리후생비	291,243,000	2,431,940	0.83	<p>○인건비등의 재상시 타당성 분석 및 신임화시의 정확성을 기해 예산편성 효율적으로 사용 불응액을 최소화 하도록 함으로 인건비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함함.</p>	농업기술센터	여
과목	예산현액	불응액	비율																		
기본급	792,297,000	469,880	0.06																		
수당	185,747,000	2,671,680	1.44																		
부리후생비	291,243,000	2,431,940	0.83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해당과실(기관)	조치결과(여부)																							
11	임시적세의 수입중과태료 수입 미수납액 과다 발생	<p>○ 회계연도내의 세입분액에 있어 미수납액이 상당부분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과소확정되어 지방재정원확충 및 건전 재정운영의 노력이 미흡.</p> <p>(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목</th> <th>징수결정액</th> <th>예산액</th> <th>실제수납액</th> <th>미수납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과태료수입</td> <td>1,072,458</td> <td>279,000</td> <td>476,418</td> <td>596,040</td> <td>다음연도이월</td> </tr> </tbody> </table>	과목	징수결정액	예산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과태료수입	1,072,458	279,000	476,418	596,040	다음연도이월	<p>○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과태료에 대하여는 차량 소유권 이전과 책임보험료 기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시보 및 지역신문에 게재 홍보하여 과태료 발생 요인을 사전 방지하고,</p> <p>○ 과태료 발생시 고지서 즉시 송달 및 반송분에 대하여 신겨주지 주소를 파악 재발송하여 채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p> <p>○ 미수납액에 대하여 사유별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채권확보 등 사유별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채납액을 일소하고,</p> <p>○ 세입예산은 책정함에 있어 정확한 세수 예측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음.</p>	세무과	여											
과목	징수결정액	예산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과태료수입	1,072,458	279,000	476,418	596,040	다음연도이월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미수납액</th> <th colspan="3">사 유</th> </tr> <tr> <th>고</th> <th>질 적</th> <th>채 납</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기 타</td> </tr> <tr> <td></td> <td>책임보험료 과태료 : 191,306</td> <td></td> <td></td> </tr> <tr> <td>569,040</td> <td>289,704</td> <td>검사 과태료 : 66,100</td> <td>306,336</td> </tr> <tr> <td></td> <td></td> <td>기 타 : 32,288</td> <td></td> </tr> </tbody> </table>	미수납액	사 유			고	질 적	채 납				기 타		책임보험료 과태료 : 191,306			569,040	289,704	검사 과태료 : 66,100	306,336			기 타 : 32,288			
미수납액	사 유																											
	고	질 적	채 납																									
			기 타																									
	책임보험료 과태료 : 191,306																											
569,040	289,704	검사 과태료 : 66,100	306,336																									
		기 타 : 32,288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처 사 항	해 당 과 실 (기 관)	조치 결과 여부
12	각종 불용액처리 미흡	<p>○보건의위생 관리의 경우 해당 사업 대상자 미발생으로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예산 현액대비 21%인 31,373천원으로 과다발생.</p> <p>○공보의들의 처방 차이로 다량의 약을 미리 구입하기 어렵고 기자제 및 소모품 미구입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의 불용액 50,000천원 상당 발생. (정상적경비 20,154천원 보조사업30,190천원)</p>	<p>○약구입시 약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 수급권자, 일반인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p>	보건소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실 과 (기관)	조치 결과 여부
13	공익근무요원의 부적절한 수급 으로 불응하여 발생	<p>○ 현 황</p> <p>- 예산현액 : 38,039,000원</p> <p>- 불 용 액 : 17,380,940원</p> <p>○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계상으로 불응액 과다발생 및 해당부서의 행정 예측 및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잘못된 사항임.</p>	<p>○ 공익근무요원 인력수급 및 소집 해제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 분석 하여 건전한 예산운용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p>	<p>환 경 보호과</p>	<p>여</p>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당 실 과 (기관)	조치 결과 여부
13	공익근무요원의 부적절한 수급 으로 불응액과 발생	<p>○ 현 황</p> <p>- 예산현액 : 23,538,000원</p> <p>- 불 용 액 : 10,545,110원</p> <p>(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계상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및 해당부서의 행정 예측 및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한것은 잘못된 사항임.)</p>	<p>○ 인력수급 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인력이 있을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으며, 불용액 예상시 추경에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음.</p>	문화체육 시설관리 사 업 소	어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14	제목	주차장 특별회계 장수율저조	지적사항	○ 현황 (단위:천원)	조치사항	해실과(기관)	조치결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 년도</th> <th>예산현액</th> <th>징수결정액</th> <th>징수액</th> <th>징수율 (%)</th> </tr> </thead> <tbody> <tr> <td>2001년도</td> <td>1,414,171</td> <td>1,370,772</td> <td>1,282,592</td> <td>93.6</td> </tr> <tr> <td>2002년도</td> <td>1,477,939</td> <td>1,587,814</td> <td>1,428,654</td> <td>90.0</td> </tr> </tbody> </table> <p>○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율이 전년도 대비 93.6%에서 90.0%로 떨어지고 미 수납자의 96.7%가 고질적 체납으로 나타난 것은 징수 의지의 부족 및 채권확보의 소홀에서 오는 사항으로 건전재정 확충 노력이 미흡함.</p>	구분 년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	2001년도	1,414,171	1,370,772	1,282,592	93.6	2002년도	1,477,939	1,587,814	1,428,654	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채권 확보대책 - 불법 주정차 과태료체납시 1차 독촉후 즉시 압류 조치 ○ 징수대책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수시로 독촉고지서 발송 - 체납자에게 자진납부 토록 유도 - 체납자 명부에 의거 수시 전화 독촉 등을 통한 납부 독려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 하겠음. 	교 행정	여
구분 년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																			
2001년도	1,414,171	1,370,772	1,282,592	93.6																			
2002년도	1,477,939	1,587,814	1,428,654	90.0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당 과 실 (기 관)	조 치 결 과 여 부
15	타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p>○사회단체 및 임의보조금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지급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바 인터넷, 지역신문 공모등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p> <p>○국가기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식부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예산 및 결산서가 난해하고 일일이 대조하는등의 번거로움이 있음,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복식부기제도 도입방안을 강구 바람</p> <p>○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 예산 판단을 소홀히 하여 세출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적절한 운용대책을 강구바람</p>	<p>○임의보조금에서 매년 정액적으로 지원 되는 예산은 예산의 부기로 기재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조금의 성질상 공모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등을 통한 공모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음.</p> <p>○현재 행정지치부에서 부친시등의 지치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복식부기 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 이후에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 중앙계획에 따라 복식부기제도가 치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p> <p>○예산편성시 요구사업의 타당성과 계획 성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음.</p>	<p>기획감사 담당관실</p>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목 적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당 실 관 (기관)	조치 결과 여부
15	타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p>○해당기관의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는 바, 대부분 간이세금 계산서가 증빙서류로 첨부되어 있고 일부단체의 경우 영업권명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출처불명의 계산서도 정산이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바 보다 엄격한 정산 관리 및 지도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p>	<p>○보조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산시 보조금관리조처에 의거 사업완료후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보조사업의 취지에 적합하게 집행토록 지도하였으며, 추후 정산서의 증빙서류를 간이세금계산서로 제출하는 것을 지양하는등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보조단체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였음</p>	문 화 관 광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실 과 (기관)	조치 결과 여부
15	타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p>○해당기관의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는바 대부분 간이세금 계산서가 증빙서류로 첨부되어 있고 일부단체의 경우 영업기관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출처불명의 계산서로 정산이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바 보다 엄격한 정산 관리 및 지도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p>	<p>○해당기관의 보조사업 보조금 결정시 보조조건에 일반사업자에게 물품등 구매할 경우 간이 세금 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 계산서를 첨부하고 영업기관의 직인이 찍힌 출처 명확한 계산서로 정산토록 명시하여 엄격한 보조금 정산이 되도록 하겠음</p>	지 역 정제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해당실정(기관)	조치결과
15	타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p>○ 새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목 과다발생 (이월 및 불용액 과다발생)</p> <p>○ 환경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 예산현액 : 350,840,000원 - 이월액 : 350,840,000원</p> <p>○ 환경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 예산현액 : 160,000,000원 - 지출액 : 128,000,000원 - 이월액 : 28,000,000원 - 불용액 : 4,000,000원</p>	<p>○ 사업명 :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 - 이월액 : 350,840,000원 - 이월사유 : 오수분포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등 사업 계획 변경으로 공기부족 - 조치내용 : 2003년도 대상 확정 및 사업완료</p> <p>○ 사업명 : 정통화장실 신축공사 - 이월액 : 28,000,000원 - 이월사유 : 제3회추경에 예산변경 확보토 공기부족 - 조치내용 : 2003년도 사업완료 추진</p> <p>○ 사업명 : 오수처리미나리평 설치 - 불용액 : 4,000,000원 - 불용사유 : 사업대상지역 중 1개소가 토지영작을 사유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여 불용액 발생 - 조치내용 : 추후 사업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 조치함</p>	환경 보호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15	제 목	타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지 적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실 과 당 (기관)	사 회 과 복 지 과	조 치 결 과 여 부																
			<p>○ 새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목 과다 발생 (이월 및 불용액 과다 발생)</p> <p>- 사회복지 재요비·사업부채비·지치단체간 부담금의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판단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p> <p>전례답습적 또는 점증주의적인 예산 편성을 우선 시행함에 따라 새출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시혜가 과다발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임으로,</p> <p>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 해당년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타당성을 확인·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예산편성 및 운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 현 황 (단위: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과 목</th> <th colspan="2">예산 집행 내역</th> </tr> <tr> <th>예산액</th> <th>집행액 잔 액</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378,577</td> <td>91,940 286,637</td> </tr> <tr> <td>채 료 비</td> <td>128,361</td> <td>91,940 36,421</td> </tr> <tr> <td>시설부대비</td> <td>216</td> <td>- 216</td> </tr> <tr> <td>자치단체간 부담금</td> <td>250,000</td> <td>- 250,000</td> </tr> </tbody> </table> <p>○ 불용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 료 비 : 대상지인 조면부읍사무소의 감소에 따른 재할근로사업 및 지역봉사 활동 인부임 - 사업부채비 : 총령각보수시 저출요인 미발생 - 지치단체간부담금 : 홍성 화장장사용에 따른 시군부담금으로 해당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조정의연으로 미지출 <p>○ 조치내용</p> <p>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소요예산판단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음.</p>	과 목	예산 집행 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 액	계	378,577	91,940 286,637	채 료 비	128,361	91,940 36,421	시설부대비	216	- 216	자치단체간 부담금	250,000	- 250,000			
과 목	예산 집행 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 액																						
계	378,577	91,940 286,637																						
채 료 비	128,361	91,940 36,421																						
시설부대비	216	- 216																						
자치단체간 부담금	250,000	- 250,000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목 적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당 실 과 (기 관)	조치 결과 여부
15	타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p>○세출 예산 전액 미집행 과목과 다발생 (이월 및 불용액 과다발생)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 예산 판단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합리적 이고 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전례답습적 또는 점증주의적인 예산 편성을 우선 시행함에 따라 세출예산이 전액 미 집행되는 사례가 과다 발생 하고 있는 것은 잘 못된 사항임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 해당 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타당성을 확인·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예산편성 및 운용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지역경제개발 민간대행사업비 외)</p>	<p>○세출예산 전액 미 집행사항은 당초 수석산업단지에 500만원을 계상 하여 민간대행 사업비로 지원코자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으나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기반사업 보수비등이 지원되어 미집행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및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타당성을 확인·검토하여 예산편성토록 하겠음.</p>	지 역 경 제 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실 과 (기관)	조치 결과 여부
15	타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p>○ 새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목 과다발생 (이월 및 불용액 과다발생)</p> <p>- 지적관리 전산개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현액 : 6,500,000원 · 불 용 액 : 6,500,000원 	<p>○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관련사업이 완전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p> <p>○ 예산집행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서산시 전체확대 시행시 편성하여 집행코자 불용액 발생 하였음.</p> <p>○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계상토록 하겠음.</p>	지적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해당실과(기관)	조치결과여부
15	타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p>○ 새출예산 전역 마집행 과목 과다발생 (이월 및 불용액 과다발생)</p> <p>- 지역개발,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p> <p>· 예산현액 : 160,000,000원</p> <p>· 이월액 : 160,000,000원</p> <p>- 건설하천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p> <p>· 예산현액 : 14,500,000원</p> <p>· 불용액 : 14,500,000원</p>	<p>○ 2002년도 본예산에 도선 건조비 80,000천원을 편성 도선 건조기로 하였으나, 건조비가 부족하여 2회 추정시 80,000천원을 추가로 예산 반영하였고 2002년 11월 계약, 도선건조기간이 6개월로 2003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2003. 4. 10 준공함.</p> <p>○ 폐천부지 매각 측량 수수료 4,500천원과 무상양어 구기천부지조사 수수료 10,000천원 등 도비보조금 예산으로 보조 내시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 14,500천원중 폐천부지 매각 측량 수수료 목으로 2002년 12월중에 2,000천원을 송금하고 12,500천원은 미 송금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부득이 불용처리 함.</p>	건설과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당 과 실 (기 관)	조 치 결 과 여 부
		-건설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 17,000,000원 ·이 월 액 : 17,000,000원	○충청남도로부터 지하수채공원상 복구사업으로 17,000천원 보조 내시되어 2002년도 3회추경에 예산반영 하였으나, 회계연도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명시이월함.	건설과	여
		-건설하천관리, 보조사업, 전신개발비 ·예산현액 : 12,000,000원 ·이 월 액 : 12,000,000원	○하천검사용 및 폐천부지 폐각 방지 전산화는 보조금 교부가 12월중에 결정되어 회계연도 내에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명시 이월함. ○앞으로는 적절한 예산편성 및 운용대책을 강구하여 여사한 사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음.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해실과(기관)	조치결과여부
15	타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p>○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목 과다발생 (이월 및 불용액 과다발생)</p> <p>-축수산 진흥 자산 및 물품취득비</p>	<p>○어업지도선 펙스 구입비 980천원을 1회 추경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정수물품 미 책정으로 구입을 하지 못하였으며,</p> <p>○차후 소요 물품정수를 정확히 조사책정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p>	축산 해양과	어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해 실 과 (기관)	조치 결과 여부
15	타 지적사항 및 관고사항	<p>○세출 예산 전액 미집행 과목과다발생 (이월 및 불용액 과다발생)</p> <p>예산편성시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 예산 판단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p> <p>전해답습적 또는 점증주의적인 예산편성을 우선 시행함에 따라 세출예산이 전액 미 집행되는 사례가 과다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임으로,</p> <p>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 해당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타당성을 확인·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운용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예산 음암하수처리장 설치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양어금 계속사업 이월 불용액과 세출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불용액으로 앞으로 투자사업 예산 편성시 사업의 재확성 사업의 필요성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음.</p>	상허수도 사업소	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시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사항	해당과실(기관)	조치결과(여부)
15	타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p>○ 새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목 과다발생 (이월 및 불용액 과다발생)</p> <p>- 농촌진흥, 보조사업, 감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현액 : 7,230,000원 · 이월액 : 7,230,000원 <p>- 농촌진흥, 보조사업, 시설부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현액 : 2,160,000원 · 이월액 : 2,160,000원 	<p>○ 사업명 무기등하우스 시설공사의 도시계획 도로면입 및 확·포장공사에 따른 용지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중, 2002년 11월에 농업기술센터 옆 사유지 서산시 예천동 496-13번지 3,300㎡ 대부계약 체결이 체결되었으나 동절기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됨.</p> <p>○ 추후 사업 추진시 사업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적절히 반영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p>	농업기술센터	여